

작성부서	배포범위	작성일자	보존기한
원가혁신TF	코웨이 구매실	2023.08.09	N/A

협력업체 선정 및 가격결정 지침

구매실

작성부서	배포범위	작성일자	보존기한
원가혁신TF	코웨이 구매실	2023.08.09	N/A

목 차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업체선정 및 운용기준
5. 가격결정 운용
6. 첨부 (Flow-chart)

작성부서	배포범위	작성일자	보존기한
원가혁신TF	코웨이 구매실	2023.08.09	N/A

1. 목적

이 지침서는 코웨이(이하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당사의 운영상 필요한 생산용 및 비생산용 자재, 구성 부품, 조립품, 제품, 서비스, 용역 등에 대한 업체선정 및 가격결정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협력업체: 원사업자의 제조, 건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

3.2 협력업체 풀(Pool): 원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 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

3.3 협력업체 선정(정기평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유지갱신)하는 것

3.4 협력업체 운용: 원사업자가 협력업체로 선정, 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 취소 등 협력 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관리

3.5 승인업체 : 예비협력업체 평가에 의해 당사의 유자격 협력업체 목록(AVL)에 등록된 업체

3.6 일반경쟁입찰 : 계약 대상 물품, 용역 등의 규격 및 시방서와 계약 조건 등을 공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입찰 희망자가 모두 입찰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국가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3.7 제한경쟁입찰 :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3.8 지명경쟁입찰 : 신용과 실적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는 방법

3.9 수의계약 :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경쟁계약 원칙에 대한 예외)

작성부서	배포범위	작성일자	보존기한
원가혁신TF	코웨이 구매실	2023.08.09	N/A

4. 업체선정 및 운용기준

4.1 기본원칙

이 지침은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4.2 신규거래 등록기준 (발생사유)

자재의 신규개발은 다음의 경우에 대해 신규로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 4.2.1 신규부품의 개발의뢰에 따라 기존업체에서 제조 납품 할 수 없는 신규개발부품(국산화 포함)이 발생한 경우
- 4.2.2 물량증가로 인하여 거래선을 증가해야 할 경우
- 4.2.3 당사의 일시적인 필요성 및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특별히 등록이 필요한 경우
- 4.2.4 구매정책상 신규업체 거래가 요망될 경우
- 4.2.5 기존 협력업체의 경영방침이 당사에 부적합할 경우
- 4.2.6 해당 자재의 품질 수준을 적극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3 협력업체 선정, 운용 지침

4.3.1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1) 협력업체 선정(정기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_정기평가)심사 개시 30일전** 사업장, 전자매체(원사업자의 웹사이트, 이하 같음)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 (2) 협력업체 선정(정기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평가)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한다.
- (3) 협력업체 선정(정기평가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대외반출] (양식) 코웨이 신규 협력사 미선정 통지 공문]

작성부서	배포범위	작성일자	보존기한
원가혁신TF	코웨이 구매실	2023.08.09	N/A

(4) 신규업체 선정은 필요시 수시로 진행하며, 특별한 사유일 경우 별도 품의하에 실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및 선정 여부는 상기 (3)항에 따른다.

(5) 개방적인 협력업체 관리를 통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매시스템"을 운영하며 품질, 가격, 납기, 기술력, 환경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로 당사와 거래를 희망할 경우, 구매시스템에 등록하여 정해진 프로세스에 의거 진행 된다.

4.3.2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1) 협력업체 선정(정기평가)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3.2.1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선정 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을 적절하게 한다.

<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부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 ①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 ②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 ③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2) 협력업체 정기평가 대상업체는 특별한 신청기간없이 통합평가관리 기준에 따라 자격이 유지된다.

(3)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4)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 한다.

(5)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작성부서	배포범위	작성일자	보존기한
원가혁신TF	코웨이 구매실	2023.08.09	N/A

4.3.2.2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1) 협력업체로 선정,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여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을 두지 않는다.

4.3.2.3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4.3.2.4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3.2.5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정당한 등록취소 기준 및 적용 예시 (기본거래계약서에 반영)

①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③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④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부당한 등록취소 기준 및 적용 예시

①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②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③ 수급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미발주 또는 미 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다만,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가능)

④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3.2.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제재 조치는 주의,경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 등 줄 수 있다.

작성부서	배포범위	작성일자	보존기한
원가혁신TF	코웨이 구매실	2023.08.09	N/A

5. 가격결정 운용

5.1 입찰원칙

- 5.1.1 국내/외를 막론하고 구매 대상품을 생산,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그 대상업체로 한다.
- 5.1.2 일반경쟁입찰의 경우는 최소 2개사이상의 업체에게 입찰을 요청하여야 한다.
- 5.1.3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2개사 이내의 업체에게 입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5.1.4 단 금형 및 설비의 경우 금형업무지침서에 우선한다.

5.2 입찰구분

- 5.2.1 모든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지명 경쟁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 5.2.2 해당물품의 특성상 생산이 제한적이거나 당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정업체와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였을 경우
- 5.2.3 구매LEAD TIME이 짧아 업체정보수집이 제한적일 경우
- 5.2.4 해당 물품의 제조업체가 국내/외적으로 제한되어있는 경우
- 5.2.5 물품의 특성상 특수한 설비, 기술, 자료, 정보 등이 필요하고 충분한 실적과 신용이 있는 업체가 아니면 구매목적 달성을 수 없는 경우
- 5.2.6 군소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성실하고 우수한 업체를 선정코자 할 경우
- 5.2.7 단 금형 및 설비의 경우 금형업무지침서에 우선한다.

5.3 업무절차

- 5.3.1 입찰사유 발생
 - 신규품목의 경우 구매요청부서는 구매시스템을 통하여 구매요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진행한다. 구매요청 시 거래가능업체, 구매예상가격, 구매수량, 구매 사양, 완료요청일 등을 필수 기재하도록 하며, 구매요청 부서장은 이를 확인하고 결재하도록 한다.
 - 5.3.1.2 기존 계약품목의 경우 구매부서장은 년 1회이상 연간 거래품목을 분석하여 입찰대상 품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작성부서	배포범위	작성일자	보존기한
원가혁신TF	코웨이 구매실	2023.08.09	N/A

5.3.2 견적요청준비

5.3.2.1 구매부서장은 입찰사유가 발생시 입찰대상품목인지를 확인한다.

5.3.2.2 구매부서장은 구매요청서 상세히 점검한 후 최종 접수확인을 진행한다.

5.3.2.3 구매요청서의 기재내용 검토결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요청부서로 통보하고 협의 조정한다.

5.2.3.4 구매목표가격은 구매담당자가 구매품의 특성 및 계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구매가 가능하고, 구매가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이며, 이 가격은 입찰에서 낙찰업체의 선정기준이 된다.

5.3.3 입찰업체 선정

5.3.3.1 입찰에 참여가능한 업체는 당사의 승인업체에 한한다.

5.3.3.2 구매 LEAD TIME이 짧아 미승인업체로 입찰 의뢰할 경우에는 최종낙찰 업체 확정 전에 업체 간이실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5.3.3.3 구매담당은 입찰대상업체를 구매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구매요청 부서에게 통보를 한다.

5.3.4 입찰설명회

5.3.4.1 정확한 입찰사양 설명을 위하여 입찰의뢰 전에 입찰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5.3.4.2 참석대상자는 입찰대상업체, 구매담당, 구매요청담당이 참석한다.

5.3.5 입찰의뢰

5.3.5.1 구매부서장은 각 품목의 특성에 따라 입찰방법을 결정한다.

5.3.5.2 구매담당은 입찰실시 전 "입찰 계획안"을 작성하여, 구매부서장 보고를 진행하며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입찰의뢰를 진행하도록 한다.

5.3.5.3 입찰의뢰시 내용에는 구매시방서 및 납품장소, 납기, 목표가격, 결재기준 등 계약조건을 갖추어 입찰 대상업체로 입찰 의뢰를 진행한다.

5.3.6 입찰

입찰은 구매시스템을 통하여 기본으로 운영하며, 경우에 따라 오프라인 입찰도 진행가능하다.

5.3.6.1 구매시스템 (온라인) 입찰

작성부서	배포범위	작성일자	보존기한
원가혁신TF	코웨이 구매실	2023.08.09	N/A

- (1) 구매시스템 입찰요청을 통해 마감일시, 제출방법을 명기하여 발송한다.
- (2) 구매시스템 입찰마감이 되면, 담당자는 입찰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사유(일정변경, 참여업체 취소등)로 인해서는 참여 업체에 대해 사전공지 및 내부 보고 이후에 마감일정을 변경하여 완료할 수 있다.

5.3.6.2 공개입찰 (오프라인)

- (1) 입찰 요청메일에 입찰장소, 입찰시간, 참석대상자를 통지한다.
- (2) 입찰참석 대상자는 입찰업체 참석자 및 당사의 구매담당자, 구매요청담당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3) 입찰에 응한 업체 중 입찰시간까지 미 참석한 업체는 입찰포기업체로 간주 한다.
- (4) 개봉은 입찰장소에서 공개 입찰을 진행하며, 구매부서장이 확인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5.3.7 견적서 비교분석 및 낙찰업체선정

5.3.7.1 구매담당자는 접수된 견적서류를 비교분석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당사가 제시한 구매요건과 납기를 충족시키는 최저가격 응찰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정하며, 해당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격 검토시에는 아래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한다.

- ① 가격 비교 (Price Comparison) : 유효한 산업 군에서 제시된 가격 정보, 산업별 벤치마킹 가격 또는 과거에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에 대한 가격을 비교하여 적정 가격이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② 원가분석 (Cost Buildup) : 재료비, 공정비, 노무비, 운반비 등 세부 비용 항목 조합을 통해 산출된 가격과 협력업체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산업군의 원가정보 활용 및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5.3.7.2 구매담당자는 당사의 정해진 평가방식에 적합한 응찰자와 가격협상을 하여 최종가격을 결정할 수있다. 구매요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모든 입찰자와 가격협상을 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할수있다.

5.3.7.3 어떠한 경우에도 한 업체의 견적내용을 다른업체와 논의하여서는 안된다.

5.3.7.4 당사의 정해진 평가방식을 기준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하며, 선정된 업체가 품질, 납기, 재무구조측면에서 문제발생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면 낙찰결과를 배제할 수도 있으며, 그 사유는 명확 히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3.7.5 금형의 경우 최저 응찰가격이 아니더라도 개발품목 특수성으로 인하여 최저응찰 업체

작성부서	배포범위	작성일자	보존기한
원가혁신TF	코웨이 구매실	2023.08.09	N/A

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 (1) 협력업체 수주과다에 따른 생산capa부족
- (2) 개발품의 기술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정 전문화 기술보유업체 가 존재할 경우

5.3.8 유찰

최저가 입찰금액이 구매목표가격 이상일 경우에는 구매부서장의 권한으로 유찰처리 할 수 있으며, 향후 재입찰을 실시한다.

5.3.9 계약의 체결

입찰 후 낙찰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당사와 계약서에 상호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서는 구매대상품목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선급금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체상금 등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 각서등의 형태로 대체 가능하다.

5.3.10 사후관리

계약서 체결 후 구매업무절차서에 의해 발주, 납입, 대금지불 절차가 이루어 진다.

6. 첨부 (Flow-chart)

작성부서	배포범위	작성일자	보존기한
원가혁신TF	코웨이 구매실	2023.08.09	N/A

